

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

신고의무자 인적사항	소속	직위(직급) ()
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신고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$\frac{1}{\sqrt{2}}$
 $\frac{1}{\sqrt{2}}$
 $\frac{1}{\sqrt{2}}$

신고기관의 장

직인

신고대상자별 신고기간 안내

1.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: 18세가 되는 해의 1월 31일까지
 2.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된 사람: 변동사항이 생긴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
 3. 병역사항 공개보류자: 변동사항이 생긴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
- ※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변동 신고사항: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- 병역준비역 편입 • 병역판정검사 수검 • 병역역종 변동
 -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의 시작 및 종료 • 병역기피 또는 행방불명
 - 국외체재사유로 인한 병역의 연기 • 국외불법체재
 -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변동
 - 병과 및 군사특기 변동(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)

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

제출서류	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
유의사항	병역사항의 변동신고의무자가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.